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 및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공개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댐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 1)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댐관리자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2)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댐 시설물 관리 계획, 댐 저수지 운영 계획, 댐과 주변지역의 보전 및 이용,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2) 댐관리자가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 계획으로 간주토록 규정함
- 3)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광고,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 4)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변경 근거가 분명한 경우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제약요인 및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댐건설사업시 토지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정함.

바.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맞추어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타 법령에서 인용
하고 있는 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3조제4호”를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댐의 건설과 관리”를 “댐의 관리와 건설”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댐의 건설”을 “댐의 관리”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인공지능이나 드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연계·통합함으로써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4조(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소관별 댐관리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받은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밖에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댐관리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③ 수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5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①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시행계획 수립 여건 분석

3. 댐 시설물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지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5. 댐과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7. 소관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 안전관리 등 댐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세부시행

계획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수립된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은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공개)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

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11조로 한다.

제18조의3을 제12조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댐의 관리”를 “댐의 건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및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2. 사업 제약요인 및 해소방안
3. 댐 운영관리계획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

속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검토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⑥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

항”을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중전의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의2”를 “법 제13조의2”로,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의2제2항”을 “법 제16조의2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

로,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법 제17조”를 “법 제7조”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의2제3호”를 “법 제9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의2”를 각각 “법 제9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3”을 “법 제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법 제18조의3”을 “법 제9조의2”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제1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를 “제8조”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의2제2항”을 “법 제1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10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⑦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제10조제1항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⑪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같은 호 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

설사업

⑮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 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⑯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⑱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⑳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㉒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 건설기본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별표 3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㉞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㉟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 공유수면의매립 나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㊲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

른 댐사용권의 설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	100	15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u>댐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 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 다. <u>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u> <u>제1절 댐의 건설</u>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 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제1조(목적) ----- 「<u>댐건설 · 관 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적용 범위) 「<u>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u>」----- 제3조제1 항제4호----- ----- ----- ----- --. <u>제2장 댐의 관리와 건설</u> <u>제1절 댐의 관리</u>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법 제4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 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인공지능이나 드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연계·통합함으로써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4조(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소관별 댐관리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받은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밖에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댐관리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③ 수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댐관리기본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5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①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시행계획 수립 여건 분석
3. 댐 시설물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지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5. 댐과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7. 소관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검토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담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담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담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담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

8. 그 밖에 담 안전관리 등 담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세부시행계획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수립된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은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공개)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3조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삭제

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부시행계획의 수

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
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
사에 위탁한다.

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
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
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
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제8조(댐관리의 위탁) ① -----

--- 법 제5조제2항-----

----- 해야 -----.

② _____

법 제5조제2항-----

제9조(댐관리규정) ① -----

--- 법 제5조제2항-----

----- 법 제16조제1항-----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
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
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
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
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

업)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 따
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
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령」 제14조에 따른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

----- 법 제7조-----
----- 작성해야
-----.

② 법 제7조제1항 -----

----- 포함돼야 -----.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 법 제8
조-----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법 제9조제3호-----

-----.

② -----

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3(댐의 평가 실시)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 · 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이하 “댐의 평가”라 한다)를 시행하게 한다. 다만, 다음

-- 법 제9조-----

1. ~ 3.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9조-----

-----.

제12조(댐의 평가 실시) ① 법 제9조의2-----

1. · 2. (현행과 같음)

② -----

----- 고려하여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 자원관리계획-----
-- 법 제9조의2-----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않을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절 댐의 건설

제13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및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2. 사업 제약요인 및 해소방안

3. 댐 운영관리계획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검토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

	<u>화</u> <u>2.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u> <u>⑥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u>
<u>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u>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u>고시하여야</u> 한다.	<u>제14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u> ----- <u>시·도지사</u>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 ----- ----- <u>법</u> <u>제11조제4항</u>----- ----- ----- ----- <u>고시해야</u> ----- ---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 4. (생략)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 2. (생략)

제13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

② 법 제11조제5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

----- 포함돼

야 ----.

1. ~ 11.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4항-----

---.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

----- 법 제13조의2

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 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 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 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 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 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 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 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환 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

----- 법 제13조 제3항-----
-----.

② 법 제13조제3항-----

----- 제출해야 -----.
----- 법 제13조제3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
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
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
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
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
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 10. (생략)

제2절 댐의 관리

----- 제출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
의 사용 승인신청) ① -----

----- 법 제16조
의2제2항 -----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의3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2. (생략)

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④ (생략)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공업용

<삭 제>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① -----

--- 부담해야 ----- 제9조-----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8조-----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은 <u>법 제12조 제1항</u>에 따른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 (생략)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u>법 제8조제1항</u>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u>법 제12조제2항</u>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u>법 제12조의2제2항</u>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5. (생략) ②·③ (생략) 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	----- ----- <u>법 제16조 제1항</u>----- ----- -----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 ----- ----- ----- -----. 1. <u>법 제12조제1항</u>----- ----- ----- ----- 2. <u>법 제16조제2항</u>----- ----- ----- ----- 3. <u>법 제16조의2제2항</u> ----- ----- ----- 4.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제12조제2항</u>에 따른 경미한 사항: 2015년 1월 1일 2. <u>제13조</u>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2015년 1월 1일	----- ----- ----- ----- ----- ----- ----- 1. <u>제14조제2항</u>----- ----- 2. <u>제15조</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621